

시·도 교육청의 안분액(제75조제2항제7호나목 관련)

총액		금 34,260백만원	
교육청	금액(백만원)	교육청	금액(백만원)
서울특별시	8,887	강원도	1,158
부산광역시	2,558	충청북도	1,166
대구광역시	1,828	충청남도	1,593
인천광역시	1,019	전라북도	1,312
광주광역시	1,145	전라남도	1,297
대전광역시	1,143	경상북도	1,963
울산광역시	891	경상남도	2,500
세종특별자치시	252	제주특별자치도	705
경기도	4,843		

비고:

이 표의 시·도 교육청별 안분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시·도별 지방소비세액을 기준으로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제1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84조에 따른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의 산출방식에 따라 산정한 금액임.

시·도별	제75조제2항제6호에 따른	해당 시·도의 소비지수 × 해당 시·도의
지방소비세	안분액 중 시·도 안분액의	가중치
액	합계액	× $\frac{\text{각 시·도별 소비지수와 가중치를 곱한 값의 전국 합계액}}{\text{전국 합계액}}$